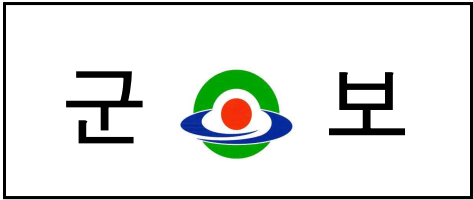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94호 2026. 3. 23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예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,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
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25호)
- 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27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,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경상북도 고시 제2025-464호(2025.12.1.)로 군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(공원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이를 반영한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23일

예 천 군 수

1.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
- 사업의 명칭 :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및 내용

- 면 적 : 공원전체면적 49,789㎡ 중 11,911㎡
- 내 용 : 토공·배수공·구조물공, 포장공 등 1식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예천군수(산림녹지과)
- 주 소 :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7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,
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종 류	성 명	
합계				41,443	11,911					
1	예천읍 서본리	65-2	임	552	310		예천군			
2	예천읍 서본리	65-14	임	2,284	1533		예천군			
3	예천읍 서본리	65-48	전	176	149		예천군			
4	예천읍 서본리	65-50	임	330	339		예천군			
5	예천읍 서본리	69	전	222	190		예천군			
6	예천읍 서본리	239-1	전	313	313		예천군			
7	예천읍 서본리	240	대	15,976	979		예천군			
8	예천읍 서본리	241-1	전	358	358		예천군			
9	예천읍 서본리	243-3	전	860	635		예천군			
10	예천읍 서본리	243-6	전	172	172		예천군			
11	예천읍 서본리	243-7	전	110	110		예천군			
12	예천읍 서본리	243-8	전	88	53		예천군			
13	예천읍 서본리	243-9	전	26	26		예천군			
14	예천읍 서본리	244	묘	1,306	1060		예천군			
15	예천읍 서본리	245	임	5,045	828		예천군			
16	예천읍 서본리	247	묘	6,202	306		예천군			
17	예천읍 대심리	39	전	1,584	237		예천군			
18	예천읍 대심리	40-2	묘	5,839	4,313		예천군			

2.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. 공간시설

1) 공원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3	서본 공원	근린 공원	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	49,789	-	49,789	건고 제713호 (1967.12.26)	

나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경미한변경

1) 총괄표

시설 구분	기정					변경				
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구성비 (%)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구성비 (%)
			건축 면적	연면적				건축 면적	연면적	
합계	49,789	8,551	19.5	19.5	100.0	49,789	8,537 (감 14)	25.5 (증 6.0)	25.5 (증 6.0)	100.0
기반 시설	4,132	4,132	-	-	8.3	4,422 (증 290)	4,422 (증 290)	-	-	8.9
조경 시설	144	144	-	-	0.3	144	144	-	-	0.3
휴양 시설	794	794	-	-	1.6	497 (감 297)	497 (감 297)	-	-	1.0
유희 시설	185	185	-	-	0.4	- (감 185)	- (감 185)	-	-	0.0
운동 시설	84	84	-	-	0.2	266 (증 182)	266 (증 182)	-	-	0.5
교양 시설	1,650	1,650	-	-	3.3	1,650	1,650	-	-	3.3
편의 시설	1,562	1,562	19.5	19.5	3.1	1,558 (감 4)	1,558 (감 4)	25.5 (증 6.0)	25.5 (증 6.0)	3.1
녹지· 기타	41,238	-	-	-	82.8	41,252 (증 14)	-	-	-	82.9
공원 사율	◦ 8,551 ÷ 49,789 × 100 = 17.2% (법정 40%이하)					◦ 8,537 ÷ 49,789 × 100 = 17.1% (법정 40%이하)				

※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 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

〈별표4〉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따른 근린공원 공원시설률 40%이하 준수

2) 세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시설구분	시설명	부	기정					변경					비고
			부지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	공작물	부지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	공작물	
				동수 (층)	건축 면적	연면 적			동수 (층)	건축 면적	연면 적		
합 계			49,789	1 (지상1)	19.5	19.5		49,789	1 (지상1)	25.5 (증6)	25.5 (증6)		
기 반 시 설	소 계		4,132	-	-	-		4,422 (증290)	-	-	-		변경
	도 로	1-1	3,686	-	-	-		3,991 (증305)	-	-	-		변경
	광 장		446	-	-	-		431 (감15)	-	-	-		변경
	광장	1-2	446	-	-	-		431 (감15)	-	-	-		변경
조 경 시 설	소 계		144	-	-	-		144	-	-	-		
	잔디마당	2-1	144	-	-	-		144	-	-	-		
	플랜터의자	①	-	-	-	-	6개소	-	-	-	-	-	폐지
휴 양 시 설	소계		794	-	-	-		497 (감297)	-	-	-		변경
	휴게쉼터-1	3-1	398	-	-	-		133 (감265)	-	-	-		변경
	휴게쉼터-2	3-2	85	-	-	-		76 (감9)	-	-	-		변경
	휴게쉼터-3	3-3	79	-	-	-		84 (증5)	-	-	-		변경
	휴게쉼터-4	3-4	82	-	-	-		82	-	-	-		
	휴게쉼터-5	3-4	92	-	-	-		80 (감12)	-	-	-		변경
	휴게쉼터-6	3-4	58	-	-	-		42 (감16)	-	-	-		변경
	스탠드	①	-	-	-	-		-	-	-	-	32m	신설
	전망파고라	②	-	-	-	-		-	-	-	-	1m	신설
	파고라	③	-	-	-	-		-	-	-	-	3개소	신설
	스윙벤치	④	-	-	-	-		-	-	-	-	4개소	신설
	썬베드	⑤	-	-	-	-		-	-	-	-	5개소	신설
	등의자	⑥	-	-	-	-	10개소	-	-	-	-	15개 소 (증5개 소)	변경
	앉음벽	③	-	-	-	-	27m	-	-	-	-		폐지
	파고라의자셋트	④	-	-	-	-	4개소	-	-	-	-		폐지

시설구분	시설명	부호	기정					변경					비고
			부지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	공작물	부지면적 (㎡)	건축물 (㎡)			공작물	
				동수 (층)	건축면적	연면적			동수 (층)	건축면적	연면적		
유희시설	소 계		185	-	-	-		- (감185)	-	-	-		폐지
	숲놀이터	4-1	185	-	-	-		- (감185)	-	-	-		폐지
	통나무건너기	⑤	-	-	-	-	1개소	-	-	-	-		폐지
	숲속그네	⑥	-	-	-	-	1개소	-	-	-	-		폐지
	네트망오르기	⑦	-	-	-	-	1개소	-	-	-	-		폐지
	숲움막	⑧	-	-	-	-	1개소	-	-	-	-		폐지
운동시설	소 계		84	-	-	-		266 (증182)	-	-	-		변경
	체력단련시설	5-1	84	-	-	-		- (감84)	-	-	-		폐지
	운동공간1	4-1	-	-	-	-		133 (증133)	-	-	-		신설
	운동공간2	4-2	-	-	-	-		133 (증133)	-	-	-		신설
	운동파고라	⑦	-	-	-	-		-	-	-	-	1개소	신설
	복합체력단련시설	⑧	-	-	-	-		-	-	-	-	1개소	신설
	체력단련시설-1	⑨	-	-	-	-	1개소	-	-	-	-	1개소	
	체력단련시설-2	⑩	-	-	-	-	1개소	-	-	-	-	1개소	
	체력단련시설-3	⑪	-	-	-	-	1개소	-	-	-	-	1개소	
	체력단련시설-4	⑫	-	-	-	-	1개소	-	-	-	-		폐지
교양시설	소 계		1,650	-	-	-		1,650	-	-	-		
	충혼광장	5-1	1,650	-	-	-		1,650	-	-	-		
편익시설	소 계		1,562	1 (지상1)	19.5	19.5		1,558 (감4)	1 (지상1)	25.5 (증6)	25.5 (증6)		변경
	주차장	6-1	1,523	-	-	-		1,526 (증3)	-	-	-		변경
	공중화장실1	6-2	39	1 (지상1)	19.5	19.5		32 (감7)	1 (지상1)	25.5 (증6)	25.5 (증6)		변경
녹지	-		41,238	-	-	-		41,252 (증14)					변경

3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연장 (m)	면적 (㎡)	기능	시 점	종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
합계	기정				1,259	3,686				
	변경				1,190	3,991				
기정	소로	2	1	9.0	43	425	진입로	부지경계	주차장	
변경	소로	2	1	9.0	52	515	진입로	부지경계	주차장	
기정	소로	3	1	3.5~8.0	54	315	진입로	부지경계	부지경계	
변경	소로	3	1	3.5~8.0	54	315	진입로	부지경계	부지경계	
기정	소로	3	2	2.5	437	1,092	산책로	충혼광장	주차장	
변경	소로	3	2	3.0	437	1,307	산책로	충혼광장	주차장	
기정	소로	3	3	2.5	2	4	산책로	소3-1	소3-9	
변경	소로	3	3	2.5	1	3	산책로	소3-1	소3-9	
기정	소로	3	4	2.5	74	200	산책로	휴게쉼터5	소3-2	
변경	소로	3	4	3.0	73	223	산책로	휴게쉼터5	소3-2	
기정	소로	3	5	2.5	36	103	진입로	부지경계	소3-8	
변경	소로	3	5	2.5	45	113	진입로	부지경계	소3-8	
기정	소로	3	6	2.0	79	162	산책로	휴게쉼터3	소3-2	
변경	소로	3	6	3.0	78	233	산책로	휴게쉼터3	소3-2	
기정	소로	3	7	2	76	153	진입로	부지경계	소3-2	
변경	소로	3	7	2	76	153	진입로	부지경계	소3-2	
기정	소로	3	8	2.0~3.0	220	655	진입로	부지경계	광장	
변경	소로	3	8	4.0	205	821	진입로	부지경계	광장	
기정	소로	3	9	2.0~2.5	112	197	산책로	소3-2	소3-1	
변경	소로	3	9	2.0~2.5	112	197	산책로	소3-2	소3-1	
폐지	소로	3	10	1.5~2.0	15	26	진입로	소2-1	부지경계	
기정	소로	3	11	2.0	48	97	산책로	소3-2	소3-9	
변경	소로	3	10	2.0	48	97	진입로	소2-1	부지경계	
폐지	소로	3	12	3.0	54	243	진입로	휴게쉼터5	부지경계	
기정	소로	3	13	1.5	9	14	진입로	주차장	부지경계	
변경	소로	3	11	1.5	9	14	진입로	주차장	부지경계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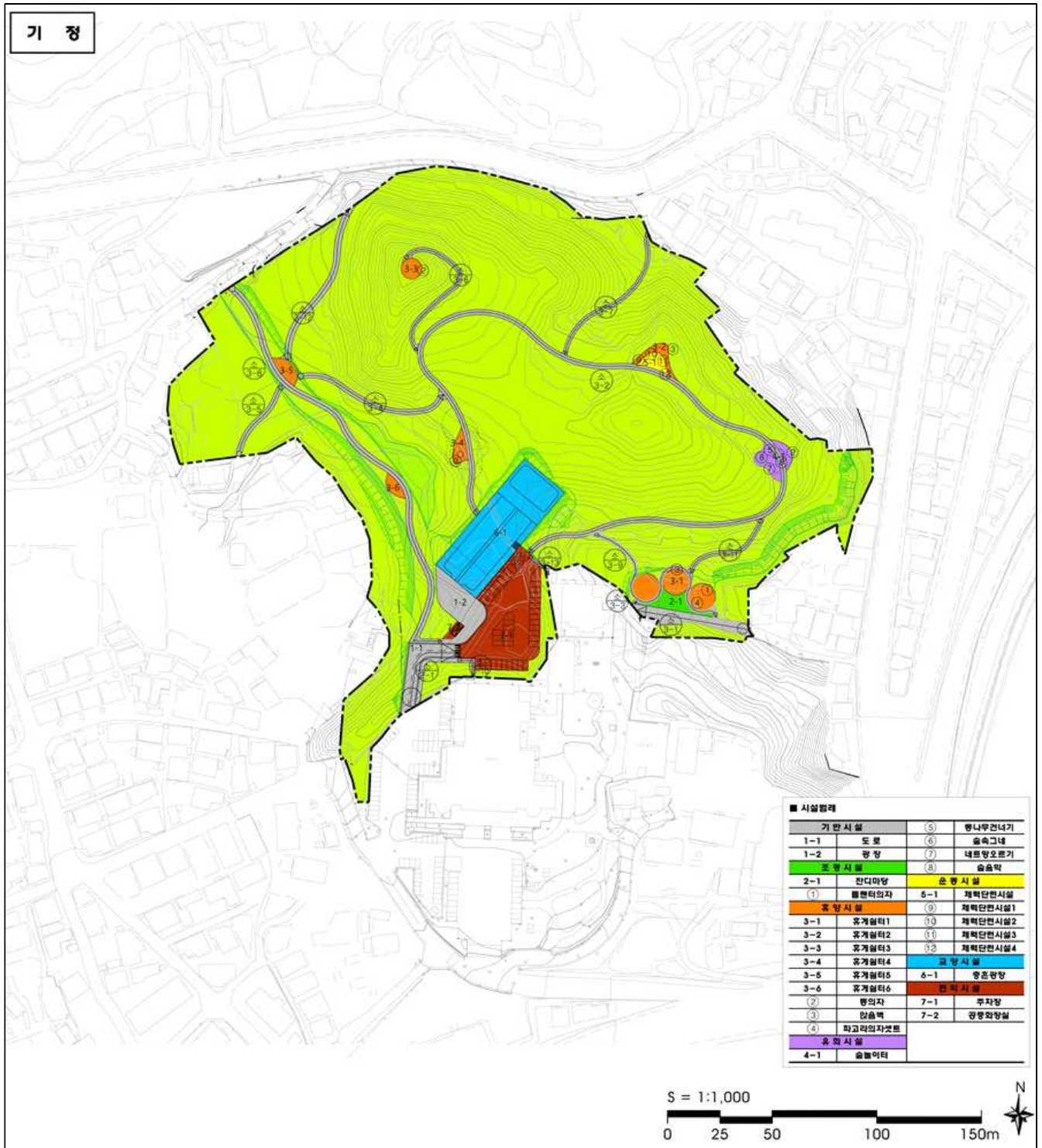
※ 위 도로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원 내 도로용지 구분 표시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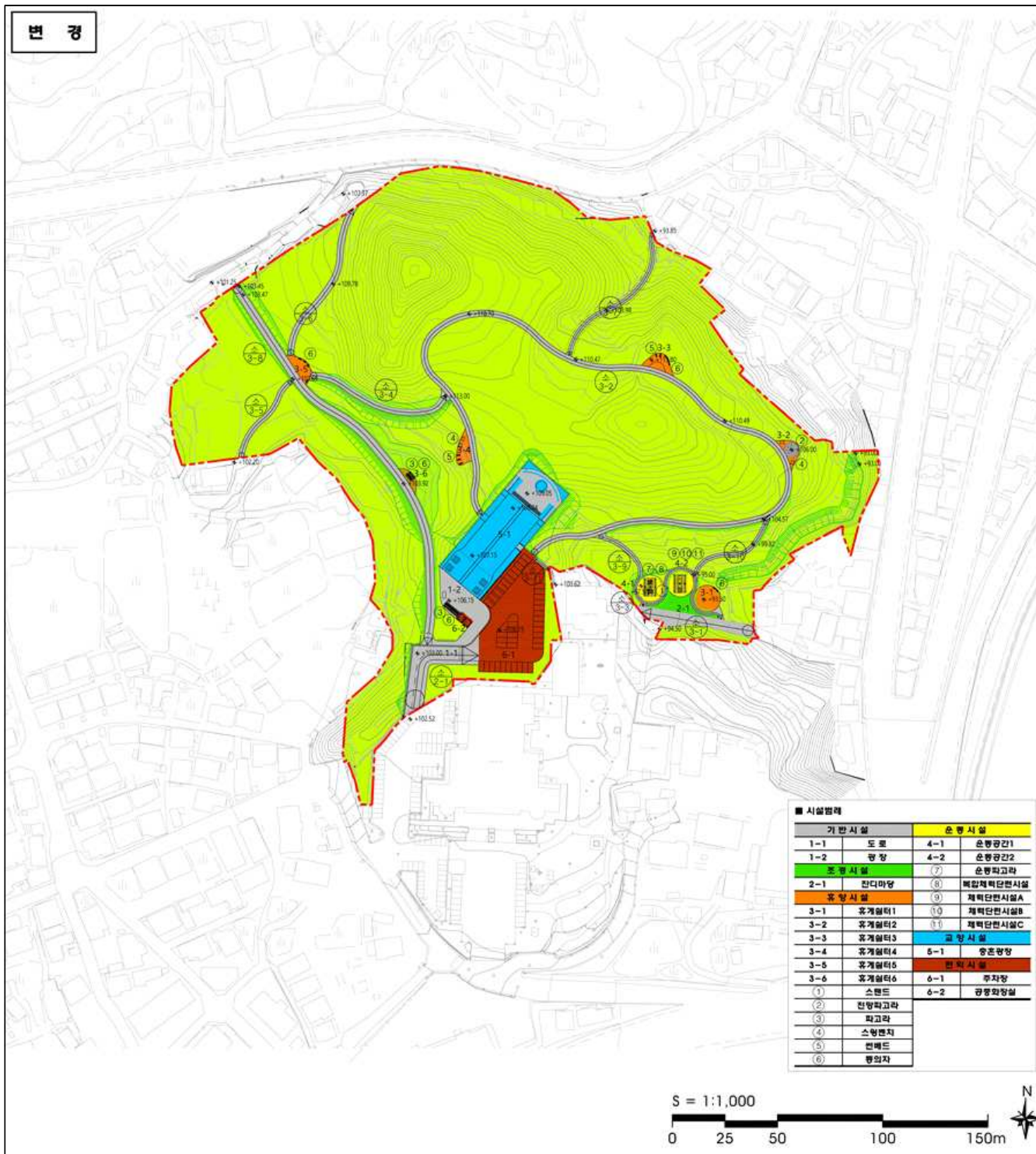
3. 실시계획 인가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 및 지형도면 등 : 게재 생략

※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그 외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함

4.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[참고]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도





■ 시설범례

가 반 시설	순 환 시설
1-1 도로	4-1 순환공간1
1-2 광장	4-2 순환공간2
조 경 시설	(7) 순환피고라
2-1 잔디마당	(8) 폐합계획단편시설
휴 쉼 시설	(9) 재택단편시설A
3-1 휴게쉼터1	(10) 재택단편시설B
3-2 휴게쉼터2	(11) 재택단편시설C
3-3 휴게쉼터3	교 양 시설
3-4 휴게쉼터4	5-1 종준광장
3-5 휴게쉼터5	편 의 시설
3-6 휴게쉼터6	6-1 주차장
(1) 스탠드	6-2 광장화장실
(2) 전망피고라	
(3) 피고라	
(4) 스카프차	
(5) 벤치	
(6) 화장실	

S = 1:1,000

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23일

예 천 군 수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대구지방환경청(수질관리과)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(대곡동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82번지
점용면적 (허가량)	17,700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
사업개요	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하천 현장실습
점용기간	2026년 3월 26일